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64호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민간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비영리 법인)가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정비 요구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 1) 단체표준 및 분쟁협의 심의 시 참석위원 제척·회피요건,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제3조, 제4조)
- 2) 인증심사 시 면제요건 신설, 단체표준 인증 심사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제공 하도록 규정 신설 (제15조)

나.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

- 1) 인증제품 사후관리 시 공장심사 주기를 현재 3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연장, 다수 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공장심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기를 조정하여 심사일수 단축 (제16조)
- 2)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지원사무 현행화 (제2조)

다. 기타

- 1) 조항번호 및 조항명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자구 수정 (별지 제11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1)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27737)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 2) 전화 : 043-870-5383
- 3) 팩스 : 043-870-5671
- 4) 이메일 : key8687@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 · 등록 · 운용 · 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 -----제18조부터 제20조에----- ----- ----- ----- -----.</p>
<p>제2조(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2. (생략)</p> <p>3. <u>단체표준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의 검토에 관한 사항</u></p> <p>4.~5. (생략)</p> <p><신설></p> <p><신설></p> <p>6. <u>기타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신설></p>	<p>제2조(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제13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u></p> <p>4.~5. (현행과 같음)</p> <p>6. <u>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7. <u>단체표준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u></p> <p>8. <u>그 밖에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u>사무국은 제2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정할 수 있다.</u></p>
<p>제3조(단체표준심의회) ① (생략)</p> <p>② (생략)</p> <p>1.~6. (생략)</p>	<p>제3조(단체표준심의회) ①(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6. (현행과 같음)</p>

7. 제4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 및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③ (생략)

1.~6. (생략)

④ 심의회는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기술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⑤~⑩ (생략)

⑪ 심의회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한다.

<신설>

7. 제4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1. 단체표준 제·개정(안) 신청단체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자

3. 단체표준 제·개정(안) 개발에 참여한 자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⑤~⑩ (현행과 같음)

⑪ 심의회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하며, 심의회의 일시, 참석위원 및 의결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⑫ 심의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p><u>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4조(분쟁협의위원회) ①~② (생략) ③ (생략) 1.~2. (생략)</p> <p>④~⑥ (생략) ⑦ 분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u>한다</u></p> <p><u><신설></u></p>	<p>제4조(분쟁협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u>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제3호4항의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협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u></p> <p>④~⑥ (현행과 같음) ⑦ 분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u>하며, 회의 일시, 참석 위원 및 심의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u></p> <p>⑧ <u>심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5조~제12조 (생략)</p>	<p>제5조~제12조 (현행과 같음)</p>
<p>제13조(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① (생략)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p>	<p>제13조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 ----- ----- -----</p>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국가 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생략)

④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제11호서식의 인증업무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단체표준 요건 검토 등)

<신설>

① 사무국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 국가 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적합성 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분야 공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검사 업무 협약체결로 제품 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위탁하는 시험·검사 항목이 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13조의2(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등록 등)

①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 시스템에 해당 단체를 등록하고

인증업무를 신청한 단체에 요건 충족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와 요건의 유지 등 인증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그 사실을 해당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등록 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② (생략)

제14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①~② (생략)

<신 설>

제15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제1호 공장심사 또는 제3호 사업장 심사의 경우 ISO 9001 인증기업, KS인증기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제품인증 분야의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정보를 제출할 경우,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의 각 항목과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⑦ (생략)

<신 설>

④~⑧(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⑨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2항에 따른

<p>④~⑦ (생략)</p>	<p>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공장심사 (반기별, 분기별 등)를 받을 경우 ⑤~⑧(현행 제④부터 제⑦항까지와 같음)</p>
<p>제17조 (생략)</p>	<p>제17조 (현행과 같음)</p>
<p>제18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사후관리) ① 사무국은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대하여 연1회이상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인증단체가 <u>한국제품인정기구(KAS)로부터 인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18조(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사후관리) ① 사무국은 <u>제2조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단체에 대하여 연1회이상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 인증 단체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KOLAS 제품인증 분야의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단체표준 인증현황 등 보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u><신 설></u></p>	<p>제19조(단체표준 인증현황 등 보고)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검토하고 보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0조~제27조 (생략)</p>	<p>제20조~제27조 (현행과 같음)</p>
<p>제28조(재검토기한) <u>이 고시는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u></p>	<p>제28조(재검토기한) <u>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 2024년</u></p>

7월 29일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월 일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표준안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발령 당시 단체표준안의 등록 신청을 사무국이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안의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합의에 관한 사항은 종전 고시(2019.12.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31호)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적용한다.

